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인증조직의 ISO 9001/14001:2015 개정판의 인증전환 업무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2.1 기존표준**

기존 표준인 ISO 9001:2008 및 ISO 14001:2004 를 통칭할 때 사용한다.

**2.2 개정표준**

개정된 표준인 ISO 9001:2015 및 ISO 14001:2015 를 통칭할 때 사용한다.

**3. 일반사항**

- (1) 기존표준 인증의 유효성은 개정표준 발간일(2015.09.15 일)로부터 3 년이며, 동 기간이 경과(2018.09.14 일)한 후부터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다.  
즉, 2018.09.14 일까지 개정표준으로 인증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정지된다.
- (3) 전환기간 중에 발행하는 기존표준 인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을 부여할 수 있으나 기존표준 인증의 유효성은 3 년의 전환기간 종료일(2018.09.14 일)과 일치해야 한다.
- (4) 개정표준 발간일(2015.09.15 일)로부터 2 년 6 개월이 경과한 날(2018.03 월)부터는 기존표준에 의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개정표준에 따른 인증서만 발행되어야 한다.

**4. 인증조직 준비사항**

인증조직은 개정표준으로 인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정표준 준수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인증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갭 파악**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변경 요구사항은 다음내용이 해당될 수 있다.

개정표준 요구사항 (조항)	적용표준	핵심 추가/변경 내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QMS,EMS	조직의 외부 및 내부 이슈 결정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대한 이해	QMS,EMS	이해관계자 및 그 요구사항 결정
4.4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QMS	조직 전반의 프로세스 결정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QMS,EMS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
6.1.2 환경측면(제품설계 포함조직 필수)	EMS	전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결정
7.1.6 조직의 지식	QMS	프로세스의 운용 및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의 결정, 유지 및 이용 가능토록 조치
8.1 운용 기획 및 관리(제품설계 포함조직필수)	EMS	전과정 관점과 일관되게 운용사항 수행

**(2) 상기에서 파악된 갭(Gap)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보완계획 수립**

**(3) 인증조직의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및 인식 제공**

특히, 내부심사원은 개정표준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및 적격성이 재 부여되어야 한다.

**(4) 기존의 경영시스템을 개정표준으로 최신화**

요구되는 문서화된 정보	예시(예시는 참고사항임)
프로세스	프로세스, 프로세스맵, 프로세스 상호관계 도표
문서화된 정보(문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문서화된 정보(기록)	상기 프로세스 및 문서화된 정보(문서)에 대한 실행 기록

\* 상기에서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이는 조직마다 다를 수 있다.

**(5) 개정된 경영시스템의 유효성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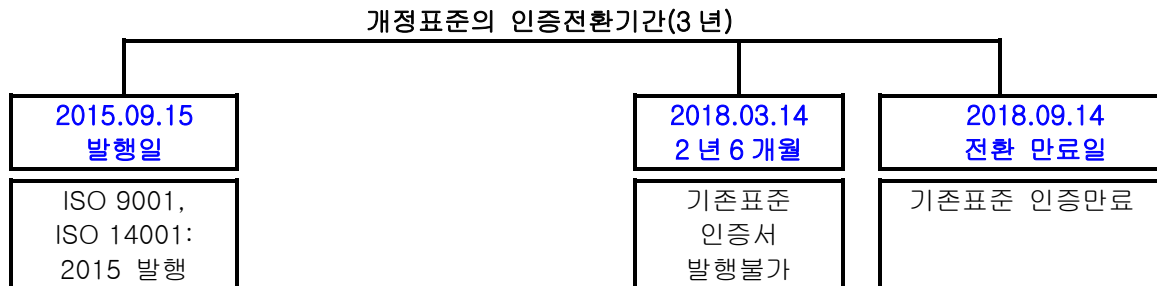
- ① 내부심사 실시    ② 경영검토 실시

**(6) 전환준비를 위해 인증기관과 연락(예: 인증기관에 전환신청 등)**

## 5. 개정표준으로의 인증전환

### 5.1 인증전환 유효기간

기존표준의 개정표준으로의 전환기간은 아래 도표와 같다.



\* 기존표준에 따른 인증심사 신청/진행/인증결정은 2018.03.14 일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2018.03.14 일 이후부터는 개정표준으로만 인증심사가 진행된다.

### 5.2 개정표준으로의 인증전환 프로세스

#### (1) 인증/전환 신청(인증조직)

개정표준으로 전환인증을 원하는 인증조직은 다음서류를 ITS 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서류
신규인증(개정표준)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설문서와 이와 관련된 부속서류
전환인증(개정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표준 전환 신청서</li> <li>• 신규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갭 파악 결과</li> <li>• 경영시스템 보안을 위한 실행계획 및 실적</li> <li>• 개정표준을 반영한 시스템문서 목록</li> <li>• 개정표준관련 교육훈련 결과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인원에 대한)</li> <li>• 내부심사 일자, 경영검토 일자</li> </ul>

#### (2) 신청서류 검토(인증기관)

인증부서장은 인증조직으로부터 신청서류 접수 후 ‘인증신청 및 계약’절차서에 따라 계약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서류 검토결과(갭)를 토대로 하여, ‘심사일수 및 비용산출기준’에 따라 심사일수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 (3) 제안서 인증조직에 송부(인증기관)

인증부서장은 심사일수가 포함된 제안서를 인증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심사계획 수립 및 인증조직에 통보(인증기관)

심사팀장은 ‘심사팀 구성 및 준비 기준’에 따라 다음사항이 충족되도록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기존 표준에 따라 정기사후관리 심사 시 확인사항
- ② 개정표준에 따라 추가 확인사항

#### (5) 인증전환 심사 실시(인증기관)

인증전환 심사는 심사팀장 주관 하에 ‘인증심사 운영 절차서’에 따라 다음 중 1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구 분	상세 내용
단계별 심사(점진적 방식)	기존 예정된 정규심사(사후관리, 갭신)와 병행하여 실시 이때, 심사일수는 갭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단독방문 심사(특별심사)	최소 1 MD 이상, 인증조직을 추가로 방문하여 심사 실시
최초심사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 실시

**(6) 인증전환 심사 시 확인/보장 사항(인증기관)**

ITS 및 심사팀은 인증전환 심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보장하여야 한다.

- ① 심사팀은 신규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실행이 요구되는 인증조직의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문서화된 발견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팀은 식별된 모든 발견사항이 적절하게 해결되고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개정표준의 인증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인증조직이 ITS 로 인증기관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ITS 는 개정표준의 인증승인 이전에 모든 전환심사의 발견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음을 기록을 통해 실증하여야 한다.
- ④ ITS 는 인증전환단계에서 시행한 신규 요구사항에 대한 인증조직의 적합성평가가 인증조직의 기존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유지를 훼손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8) 심사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심사팀은 인증전환 심사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기존 표준에 따라 정기사후관리 심사 시 확인사항
- ② 개정표준에 따라 추가 확인사항

**5.3 인증결정 및 인증서의 표기**

인증결정 및 등록과 관련된 절차는 ‘인증결정 및 등록 절차서’에 따르되 인증서상에 인증 표기 방법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인증표준명의 표기 기준**

인증서에 개정표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인증표준 표기방법
품질경영시스템	KS Q ISO 9001:2015 / ISO 9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KS I ISO 14001:2015 / ISO 14001:2015

**(2) 인증만료일자 표기 기준**

**① 전환기간 동안 기존표준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의 인증만료 일자**

개정표준 전환기간 동안 기존표준에 대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개정표준의 전환 유효성이 2018.09.14 일 까지 임을 고려하여, 인증서 만료일자는 다음 중 1 가지 방법으로 표기한다.

구 분	인증만료일자 표기 방법
사례 1	인증 만료일자 : 기존표준 인증주기의 인증만료일자를 표기한다. 다만, 인증서의 하단에 다음문구를 같이 표기한다. <b>인증 만료일자 : 2018년 10월 24일</b>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연간 사후관리심사와 3년 후의 갱신심사를 통해 유지됩니다. <b>다만,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또는 KS I ISO 14001:2009 (ISO 14001:2004)” 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성은 2018년 09월 14일까지로 제한됩니다.</b>
사례 2	<b>인증 만료일자 : 2018.09.14 일</b> 로 제한하여 표기한다.

**② 전환기간 동안 기존조직에 대한 개정표준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의 인증만료일자**

구 분	인증만료일자 표기 방법
사례 1	기존 표준에 따른 인증만료일자를 적용한다(기존 인증주기와 동일).
사례 2	개정표준전환 인증결정일에 따라 인증만료일자가 다시 정해진다.

**(2) 인증조직의 기존표준의 인증만료일자 경과 시 조치사항**

인증조직이 2018.09.14 일까지 전환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기존 인증조직의 인증서는 전환인증시점까지 ‘인증 정지, 취소 및 인증범위 취소 절차서’에 따라 인증이 정지된다.
- ② 전환인증기간 경과에 따라 인증 정지된 조직이 개정표준에 따라 성공적으로 전환인증이 완료되었을 경우, 인증서의 유효성은 전환인증결정일로부터 복원된다.  
다만, 갱신심사인 경우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